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월 30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2월 2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2월 12일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

나. 제안이유

- 봉곡 및 도량지역의 대단위 주거지구 형성으로 인구 증가 및 소방 관리 대상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청사, 관사 등)축조가 가능함으로 공유재산에 봉곡119안전센터 신축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
 - 위 치 : 구미시 봉곡동 174-5번지
 - 규 모 : 대지 1,396.4㎡, 건축연면적 726㎡(지상2층)
 - 토지매입비 : 9억9천만원(2006.11월)

- 신축시기 : 2015. 8월경
- 사 업 비 : 18억원(도비)

라.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인 업

○ 본 동의안은

- 봉곡 및 도량지역의 대단위 주거지구 형성으로 인구 및 소방 대상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경상북도의 사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신청 건임.

○ 주요 내용은

-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
 - 위 치 : 구미시 봉곡동 174-5번지
 - 규 모 : 대지 1,396.4㎡, 건축연면적 726㎡(지상2층)
 - 토지매입비 : 9억9천만원(2006.11월)
 - 신축시기 : 2015. 8월경
 - 사 업 비 : 18억원(도비)

○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봉곡동 e-편한세상아파트 신축 등 소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봉곡동 e-편한세상 신축 등) 기존 원평119안전센터 관할지역 (원평,지산,도량,봉곡,부곡,선기,수점,양호동 일부)을 원평119안전센터(원평,지산,양호동 일부)와 봉곡119안전센터(봉곡,도량,부곡,선기,수점동)으로 분할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봉곡·도량일대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재난방재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